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김성준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성준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

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의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

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차거부 행위에 “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”를 추가하며,

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